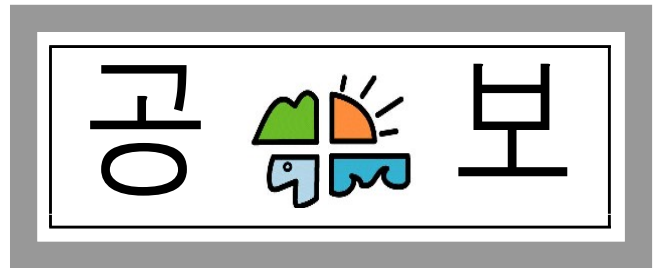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61호 2020년 5월 8일(금)

조 례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규 칙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9

공 고

- 공인 신규등록사항 공고 17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8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9호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각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을 말한다.

4.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채 상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제6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을 두되, 총괄기금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담당부서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그 밖에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탁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각 기금별로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하며,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고 통합관리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결산한다.

제11조(결손의 보전)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하되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8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66호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검토 기준)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속초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등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기금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다음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융자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융자약정 체결 시 별

도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시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를 받은 부서 등은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합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금액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의 장 인 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통합관리기금 용자 약정서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을 용자함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용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자조건) “을”이 인수할 용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연월일 : 년 월 일
2. 용자목적 :
3. 용자금액 : 금 원정(W)
4. 용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용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년 월 일까지 이를 년 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월 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② 용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용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용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월 일부터 해당연도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2. 해당연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 월 일

④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하여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일에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기일 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
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융자금의 제1조제2호의 용자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갑”은 융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융자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
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
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융자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갑”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갑”은 “을”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갑”과 “을”의 합의로서 수정할 수 있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약정서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을”의 모
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부서 :)

○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 자 년월일	융 자 조 건		총 계			비 고
		거치/상 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상 환 / 회 수 계 획				상 환 실 적				상 환 잔 액		
년월일	계	원금	이자	년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별지 제4호 서식]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

상환대상명 부서명	
융자금액 (a)	금 원 (금 원)
융자상환액 (b)	금 원 (금 원)
융자산액 (c=a-b)	금 원 (금 원)
조기상환신청액 (d)	금 원 (금 원)
상환잔액 (e=c-d)	금 원 (금 원)
조기상환 신청이유	
신청액 납부 희망일	년 월 일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융자신청부서의 장 인	
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속초시공고 제 2020 - 547 호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속 초 시 장

1. 공인 신규 등록 사유
—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2. 공인명 및 인영 : 2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또는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신규	속초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인		2.0×2.0cm	2020. 5. 8.	
신규	속초시통합관리기금출납원인		1.8×1.8cm	2020. 5. 8.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5월 07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5. 08.~ 05. 22.(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영랑동	147-294	대	52.9	6.5	김은경	영랑동 147-294 외 1필지(147-207),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020-건축과-신축허가-29 (2020.05.06.)	건축주 : 김은경
	147-207	대	46	9	김은경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74)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